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/장소	2021.9.14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/신청위치	은평 신사동 19-100번지 주상복합 / 은평구 신사동 19-100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17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## 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- 아래 조건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'조건부(보고)완료'되었으며, 조건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및 「경관법」 제28조에 의한 건축·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## < 건축 분야 >

### 건축계획

- 사업부지 남측에 추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,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남동측 보도에서 불편 없이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.

### 조경

- 지상3층 주진입부 주변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시 충분한 토심 및 급·배수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, 공개공지 녹지 내 노출되는 기둥은 차폐를 검토하기 바람.

### 방재

- 강우 시 건물 주변 도로 등 포장면 경사가 건물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검토하고, 출입문 등에서의 방수턱 혹은 빗물 유입 차단 대책 검토하기 바람.
- 지붕슬래브 배수 홈(통)의 개수·직경을 기준보다 1.5배 이상 확대 적용하고 물흐름 구배가 계단실(엘리베이터실)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방수층은 복합형 방수공법을 적용하기 바람.
- 오픈 베란다 등에서의 물구배, 배수 홈통 설치 위치·방향은 바깥쪽으로 설치하기 바람.
- 지하1층 주차장 천장 슬래브(지상 슬래브) 조경 구간 등에서 식재 뿌리에 의한 방수층 손상이 우려되므로 방근 대책 검토하기 바람.     - 계속 -

2021.9.14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/장소	2021.9.14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/신청위치	은평 신사동 19-100번지 주상복합 / 은평구 신사동 19-100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17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## < 건축 분야 >(계속)

### 환경

- 분리수거 및 원활한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공동주택·오피스텔·근린생활시설 용도별 재활용 폐기물 집하장을 분산 배치 계획하기 바람.

## 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.

구 분		주 거	비주거
녹색건축인증		그린4등급	그린2등급
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		2등급	1등급
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		8.53%	12.65%
설치량	태양광(PV/BAPV)	11.96kW	-
	태양광(BIPV)	75.00kW	94.43kW
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.
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 계획 수립 바람.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'불필요한 시설'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

- 계 속 -

2021.9.14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/장소	2021.9.14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/신청위치	은평 신사동 19-100번지 주상복합 / 은평구 신사동 19-100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21-17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## 〈 공통사항 〉(계속)

5.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
  - 1) 대지면적  $1,000m^2$ 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 $1,500m^2$  이상의 건축물
 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
6.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21.9.14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